

## 상가임대료를 인하는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 )		

② 과세연도      년    월    일부터      년    월    일까지

### ③ 세액공제 계산내용

#### 가.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

⑥ 상가건물 소재지	임차인			⑩ 세액공제 배제대상	⑪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	⑫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	⑬ 인하는 임대료 (⑪-⑫)
	⑦ 상호	⑧ 사업자 등록번호	⑨ 임차인 요건 충족	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			여, 부	여, 부			
합계							⑭

#### 나. 공제세액 계산

⑭ 공제대상금액	⑮ 공제율(50%, 70%)	⑯ 공제대상세액(⑭×⑮)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6조의3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를 인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등을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. 확약서,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세금계산서(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),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. 임차소상공인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6조의3제3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## 작성 방법

1. 임대상가건물별·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.
2. ⑨ 임차인 요건 충족: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"여"에, 그렇지 않은 경우 "부"에 표기합니다.
  - 가.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
    - 임차인이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
    -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
    - 사행성·소비성업종 등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
    - 임대인과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
    - 「소득세법」 제16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,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
  - 나.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
    - 폐업하기 전에 가목에 해당했을 것
    -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
3. ⑩ 세액공제 배제대상 여부: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"여"에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"부"에 표기합니다.
  - ※ 세액공제 배제대상 "여"에 표기하는 경우,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  - 임대료를 인정한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  
(예: 2020년 1월 1일 자로 월 임대료 100만원의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 약정을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50만원으로 인하하였으나, 다른 약정을 통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)
  - 임대차계약 갱신 등(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)을 한 경우로서 갱신 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된 경우
4. ⑪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: 임대료를 인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임대료(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전체금액이 아닌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말함) 금액을 적습니다.
5. ⑫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: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(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전체금액이 아닌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말함) 금액을 적습니다.
6. ⑬ 공제율 :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상가임대사업자는 50%, 법인 상가임대사업자와 기준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개인 상가임대사업자는 70%
  - ※ 기준소득금액 :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+ 임대료 인하액